

의안번호	제242호
------	-------

발의연월일

2024. 1. 3.

예산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자
김영진 의원 외 2인

예산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영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242호
----------	-------

발의연월일 : 2024년 1월 3일
발의자 : 김영진, 임종용, 박중수
의원(3인)

1. 제안이유

「국민건강증진법」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강 친화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공원에 맨발걷기 관련 사업을 지원하여 군민의 건강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 목적 규정(안 제1조)
- 나. 용어의 정의 규정(안 제2조)
- 다. 군수의 책무 규정(안 제3조)
- 라.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마.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바. 군수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사.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 1】

- 「국민건강증진법」 제1조, 제2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 다. 기타
- 1) 규제심사 : 해당없음
 - 2) 입법예고 : 2024. 1. 4.~ 1. 11. [8일간]
 -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 【붙임 2】
 - 4) 성별영향평가 : 【붙임 3】

예산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건강생활 실천이 가능한 맨발 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맨발걷기에 적합한 환경 조성 및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맨발걷기”란 맨땅에서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2.“맨발산책로”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서 맨발로 보행자가 건강과 힐링을 위해 산책할 수 있도록 황토나 마사토 등의 토양으로 조성된 흙길을 말한다.

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다.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라. 그 밖에 군수가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정하는 장소

3.“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 목에 따른 공원으로 예산군에 조성되는 공원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심신을 치유하고 힐링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맨발 산책로 조성 등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발굴된 맨발걷기 활성화 시책을 유기적으로 반

영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맨발걷기와 관련한 지역사회 자원 등의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예산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
2. 맨발걷기에 적합한 맨발 산책로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방안
3. 맨발 산책로 관리 및 운영계획
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 추진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자연공원 및 도시공원 정비 및 신규 조성 시 맨발 산책로 조성
2. 둘레길, 산책로, 등산로, 탐방로, 숲체험코스 정비 및 신규 조성 시 맨발 산책로 조성
3. 강변, 둘레길, 산책로 정비 및 신규 조성 시 맨발 산책로 조성
4.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 시 맨발 산책로 조성할 수 있도록 권고
5. 세족대, 신발장, 해충퇴치기, 벤치 등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관리
6.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학술 사업
7. 맨발걷기의 필요성 등 활성화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8.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걷기대회 등 행사 개최

9.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6조(행정적·재정적 지원)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포상)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불임 1】

관계법령

□ **국민건강증진법**[법률 제19293호, 2023. 3. 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3. 2., 2019. 12. 3.>

1. “국민건강증진사업”이라 함은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신체활동장려, 건강관리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2. “보건교육”이라 함은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건강에 유익한 행위를 자발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영양개선”이라 함은 개인 또는 집단이 균형된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개선시키는 것을 말한다.
4. “신체활동장려”란 개인 또는 집단이 일상생활 중 신체의 근육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소비하는 모든 활동을 자발적으로 적극 수행하도록 장려하는 것을 말한다.
5. “건강관리”란 개인 또는 집단이 건강에 유익한 행위를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6. “건강친화제도”란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직장 내 문화 및 환경을 건강친화적으로 조성하고, 근로자가 자신의 건강관리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상담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제목개정 2019. 12. 3.]

제3조(책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

②모든 국민은 자신 및 가족의 건강을 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타인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 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에서의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 및 도시 녹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을 확보하고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9. 16.]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3. 2., 2019. 12. 3.>

1. “공원녹지”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는 다음 각 목의 공간 또는 시설을 말한다.

- 가. 도시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公共空地) 및 저수지
- 나. 나무, 잔디, 꽃, 지피식물(地被植物) 등의 식생(이하 “식생”이라 한다)이 자라는 공간

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간 또는 시설

2. “도시녹화”란 식생, 물, 토양 등 자연친화적인 환경이 부족한 도시 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을 말하며,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간(「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은 제외한다)에 식생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3. “도시공원”이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다만, 제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0조,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제39조, 제40조, 제42조, 제46조, 제48조의2, 제52조 및 제52조의2에서는 나목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제외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공원으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이하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 한다)

【불임 2】

예산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주요내용)

- 예산의 지원 등(안 제6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예산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 김영진 의원

【불임 3】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3A충남예산097							
정책명	예산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부서명	의회사무과						
	담당자명	김미경	전화번호	041-339-7076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3년 11월 9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의회사무과)	'예산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한 사항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선사항 없음 <input type="checkbox"/> 자체개선안 동의 <input type="checkbox"/> 개선의견 '예산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3년 11월 10일								
가족지원과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이용미/041-339-7912)								
의회사무과장 귀하								